

국가-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 방안

2009. 12



#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II. 국가-지방간 사무재배분 .....	3
1. 단위사무의 구분 및 처리 .....	3
가. 단위사무의 개념 .....	3
나. 사무의 구분 .....	5
다. 사무의 처리 .....	8
2.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10
가. 사무배분의 원칙 .....	10
나. 사무배분의 기준 .....	13
3. 중앙사무배분의 지방이양 실태 .....	17
4. 국가와 지방사무의 재배분방안 .....	18
가. 사무재배분의 원론적 기준 .....	18
나.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필요 .....	19
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방안 .....	26
III.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방안 .....	31
1. 자치1계층안 .....	31
가. 개요 .....	31
나. 사무재배분의 원칙과 기준 .....	32
다. 사무재배분 방안(사례) .....	33
2. 자치2층제안 .....	51
가. 일반론 .....	51
나. 원칙과 기준 .....	53
다. 사무재배분 방안 .....	54
※ 지방자치법 [별표 1] 수정(안) .....	63
【참고문헌】 .....	73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지방자치의 이상적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국가권한의 적극적인 지방이양조치가 필요함
  -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 필요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지방행정계층구조개편에 적합한 합리적인 사무재배분 필요
  -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의 구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 새로운 행정계층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사무재배분의 틀이 필요
  - 2002년 사무 총조사 이후 추가적인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미흡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의 활동 기간 동안 정부차원의 지원자료 마련

## 2. 연구의 목적

- 사무구분의 명확한 기준 설정
  - 단위사무의 개념과 기준 정립
  - 국가사무, 자치사무, 공동사무 등의 개념과 범위 규정
-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 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사무권한의 확대 근거 자료 제공

-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 지방이양 기준과 원칙, 방향 등에 관한 자료 제공
  - 기관위임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기관위임사무의 폐지방안 모색)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사무재배분
- 자치1계층제 하에서의 사무재배분
  - 자치2계층제 하에서의 사무재배분

## Ⅱ. 국가-지방간 사무재배분

### 1. 단위사무의 구분 및 처리

#### 가. 단위사무의 개념

-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실태를 분석하거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사무를 사용하여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위사무 설정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점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그 결과 법령의 제정, 폐지에 따라 단위사무의 수가 다를 수 있고, 조사자에 따라 단위사무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면, 1994년 총무처 조사는 3,169개 법령에서 15,774개, 200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은 3,353개 법령에서 41,603개였음
  - 이것은 조사자에 따라 단위사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단위사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작적 정의에 의한 단위사무의 설정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2002)의 단위사무의 정의

「모든 법령 상 각각의 조문을 기반(단위)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 위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등 법령상의 처리권자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 의무가 발생(귀속)되는 경우」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즉 「각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권자의 구별에 따라서 법령상권한과 책임 및 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사무를 공통수준으로 체계화하여 단위사무의 최소단위」가 단위사무이다.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법령상 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발굴연구-최종보고서, 2002, pp.103-104.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위사무총람

「1)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원칙적으로 단위사무로 기준하되, 부수되어 처리되는 사무의 경우도 사무의 빈도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단위사무로 세분하여 포함한다.\*  
2)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시책 또는 자체계획 등에 의거 상시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무의 경우도 시직제규칙, 사무전결처리규칙 등을 참고하여 단위사무로 규정한다.\*\*

- \* 예로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사무」의 경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사회복지법 제3조), 사회복지위원의 위촉(동법시행령 제10조), 임원의 취임승인(동법 제9조), 임시이사 선임(동법 제11조), 임원취임 허가의 취소(동법 제16조 2항)을 각각 1개 단위사무로 분류함을 말한다.
  - \*\* 예로서 3대시민운동, 자연보호운동, 해수욕장관리 등과 같다.(부산광역시, 1996, p.996. 8.31조사시점)
- 자료 : 부산광역시, 법령상 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연구-최종보고서, 1996, p.9

○ 본 연구에서는 단위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각 법령에 나타난 처리권자에 따라서 법령상 권한과 책임 및 의무가 발생하는 최소 단위의 사무로 규정하고자 함<sup>1)</sup>
-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법령상 각 조·항·호를 기본(단위)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위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등 법령상의 처리권자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가 발생하는 최소단위의 사무를 말함
- 예를 들면, 제0조 (제0항 0호)의 “000 장관은(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장) 000을 ---- 한다(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단위사무로 한다는 의미임

---

1) 단위사무에 대한 일체화된 개념은 없으나, 통계수집의 목적에 맞게 경험적으로 조작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법령을 대상으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합치느냐에 대하여는 각자에 따라 달리 주장할 수 있다.

## 나. 사무의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로 구분하여 왔음

- 다음 표는 일반적인 사무의 구분 근거들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사무의 성격	자신의 사무	타자(국가·광역자치단체)의 사무	타자(국가·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사무의 범위	포괄적 (사무의 전권한성)	개별적 (개별위임)	비교적 포괄적·개별적 (일반적 위임 및 개별위임)
자치법규발령가능성	조례·규칙 발령	법령에 근거 없는 한 규칙 발령	법령에 근거 없는 한 조례발령 부적합
사무에 대한 책임	지방자치단체 책임	위임자 책임	위임자 책임
사무의 비용	지방자치단체 부담	위임자부담의 원칙	위임자부담의 원칙
사무처리의 기준	법령	법령과 위임자의 지시	법령과 위임자의 지시
지방의회와의 관여	관여가능	관여가능	관여불가능
사무에 대한 감독	적법성 감독	적법성 감독·합목적성 감독	적법성 감독·합목적성 감독
감독처분에 대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예외 : 직무이행명령)

자료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서울: 법영사, 2007), pp.310-311.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연구에서는 지방사무로 자치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 단체위임사무를 공동사무로 대체하려는 것은 단체위임사무의 개념, 의회의 관여범위, 비용부담 등 개념적용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고유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사무</li> <li>*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전단</li>   <li>*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자치입법·자치조직·재정 등)에 관한 사무</li> <li>* 주민 공공복지(토목사업, 도시계획, 위생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구역내에 한정된 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의 규정 및 일반통칙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처리가 위임된 사무</li> <li>*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일반적인 근거로 하여 법령 및 일반통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li> <li>* 사무의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li>   <li>* 사무를 처리할 때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되었거나 소속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후단)</li>   <li>* 반드시 개별적 법적 근거를 요하는 사무</li>   <li>* 직접적으로 당해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li> </ul>

자료 : 김보현·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1967, pp.385-387.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지방자치체 실시 연구자료집. 1987, pp.320-322, 행정자치부, '99 지방이양대상사무조사지침, 1999, p.22.

○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사무를 구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무</li> </ul> </li> <li>■ 시·도에서 수행하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 시·도 자치사무로 시·도에서 직접수행</li> <li>21 :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li> </ul> </li> <li>■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 : 시·군·구 자치사무로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li> <li>31 : 국가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무</li> <li>32 : 시·도에서 위임된 국가사무를 시·도로부터 재위임 받은 사무</li> <li>33 : 시·도로부터 시·도의 자치사무를 위임받은 사무</li> </ul> </li> <li>■ 공동수행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 국가 + 시·도</li> <li>42 : 국가 + 시·도 + 시·군·구</li> <li>43 : 국가 + 시·군·구</li> <li>44 : 시·도 + 시·군·구</li> </ul> </li> <li>■ 민간이양 대상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 : 국가사무이나 민간이양 대상사무</li> <li>51 : 시·도사무이나 민간이양 대상사무</li> <li>52 : 시·군·구사무이나 민간이양 대상사무</li> <li>53 : 공동수행사무이나 민간이양 대상사무</li> </ul> </li> </ul>
--

자료 : 행정자치부, '99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지침, 1999. 4, p.17.

- 본 연구에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을 우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대별하고, 대별된 사무별로 자체 처리하는 사무와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및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로 구분하고자 함
- 국가사무 측면에서 보면 지방에 위임한 위임사무 및 공동사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분류한 바, 중앙에서 지방에 위임한 위임사무와 공동사무를 모두 국가사무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및 위탁사무로 구분하고자 함
  - 그리고 지방사무 측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로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위임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위임한 사무들을 중심으로 구분하되 자치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및 위탁사무로 구분하고자 함
  - 한편 아울러 위탁사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위탁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위탁사무의 발굴에 대비하기 위해 위탁사무를 추가한 것임
  - 특히,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위임사무나 공동사무가 많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지방자치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임은 물론 사무구분에 따른 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번 조사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삼입함
- 결국 본 연구에서 확정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에 관한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사무처리방식
국가 (I)	국가사무	직접처리
	위임사무	중앙→특별지방행정관서 중앙→광역자치단체 중앙→기초자치단체 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공동사무	중앙-광역자치단체장 중앙-기초자치단체장 중앙-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위탁사무	중앙→위탁기관
지방 (II)	자치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
	위임사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공동사무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위탁사무	광역자치단체→위탁기관 기초자치단체→위탁기관

## 다. 사무의 처리

- 단위사무는 원처리권자에 따라서 국가사무, 시도사무, 시군구사무, 국가/지방공동사무, 시도/시군구 공동사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지방공동사무는 국가/시도 공동사무, 국가/시군구 공동사무,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단위사무의 현처리권자는 국가, 시도, 시군구, 국가/지방, 시도/시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사무는 정부부처 직접처리방식, 특별지방행정기관 처리방식, 기타 정부소속이나 산하기관, 시도 위임방식, 시군구 위임방식, 민간위탁방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시도사무는 시도 직접처리방식, 시도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처리방식, 시군구 위임방식, 민간위탁방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시군구사무는 시군구 직접처리방식, 시군구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처리방식, 민간위탁방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지방 공동사무는 국가, 시도, 시군구 등이 각자 처리하는 방식, 국가/지방공동처리방식, 시도/시군구 공동처리방식, 민간위탁방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 공동사무는 시도, 시군구 등이 각각 처리하는 방식, 시도/시군구 공동처리방식, 민간위탁방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국가사무	시도사무	시군구사무	국가/지방공동	시도/시군구 공동
국가사무 시도사무 시군구사무	정부부처 특별지방행정 기관 기타 소속/산 하기관	시도지사 시도 소속/산하	시군구청장 시군구 소속/산하	국가 시도 시군구 국가/지방공동 민간위탁	시도 시군구 시도/시군 구공동 민간위탁
국가/지방공동 사무 - 국가+시도 - 국가+시군구 - 국가+시도+ 시군구 시도/시군구공동	시도위임 시군구위임 민간위탁	시군구위임 기타	민간위탁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법령상 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발굴연구-최종보고서, 2002, pp.75-79.

○ 이를 다시 처리주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	시도	시군구	민간
10 중앙부처사무 11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12 소속기관사무 13 산하기관사무 41 국가/시도 공동사무 42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 43 국가/시군구 공동사무	20 자치사무 21 국가위임사무 41 국가/시도 공동사무 44 시도/시군구 공동 사무	30 자치사무 31 국가직접위임사무 32 시도로 위임된 국가 사무의 재위임사무 33 시도자치사무의 시 군구로 위임사무 43 국가/시군구 공동사무 44 시도/시군구 공동사무	50 국가, 시도, 시군구 민간위탁사무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법령상 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발굴연구-최종보고서, 2002, pp.98.

## 2.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현재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됨
  - 첫째는 자치 2계층(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계층을 유지하는 방안
  - 둘째는 자치 1계층(광역과 기초를 통합)으로 전환하는 방안
  - 셋째는 혼합안으로 특별·광역은 1계층 전환하고, 도는 현행 2계층을 유지하는 방안
-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법령 등에 제시되어 있는 사무배분의 기준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개편된 지방행정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귀결됨
- 다음에서는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을 우선 검토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별로 사무 재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가. 사무배분의 원칙

-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의 8가지의 사무배분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자율성 보장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관련사무의 일괄이양 원칙(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사무배분기준 준수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중앙부처 감독의 최소화 원칙, 행·재정 지원 원칙 등임<sup>2)</sup>
-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6조는 4개의 사무배분 원칙을 규정함
  - 첫째, 사무 중복배분 배제원칙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안영훈,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pp. 31-32.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 둘째, 보충성 원칙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 사무로,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로, 특별시·광역시·도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 셋째, 포괄적 기능이양 원칙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경우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지방분권 특별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호, 지방이양촉진법 제3조 제1항 1호 및 3호)는 원칙
- 넷째, 행정참여기회 확대 원칙은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

○ 현행법상 사무배분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b>사무배분기준 준수 원칙</b>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준수할 것
<b>자율성 보장의 원칙</b>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b>행정능률의 원칙</b>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것
<b>일괄이양원칙, 총체적 이양원칙, 또는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b>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책임과 결정 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할 것
<b>포괄적 기능이양 원칙</b>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지방분권특별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호, 지방이양촉진법 제3조 제1항 1호 및 3호)
<b>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b>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군·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이양할 것
<b>보충성의 원칙</b>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시·군·자치구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무 등 그 업무의 성격상 시·도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시·도로 이양할 것
<b>사무의 중복배분 배제원칙</b>	국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b>감독의 최소화 원칙</b>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의적 통제를 억제하고 사무 감독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규정
<b>행·재정 지원 원칙</b>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하고,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간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지원의 균형유지 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들은 다음의 표와 같음(괄호안의 수자는 중복적으로 제시한 빈도수임)

- 관련학자들이 5회 이상 제시한 원칙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의 조화원칙(5회),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7회), 자치성(책임성)의 원칙(6회), 능률의 원칙(8회), 경비부담능력의 원칙(6회), 보완성의 원칙(5회),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10회 등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국가의 배타적 권한으로서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li> <li>(4) 계획·집행 분업의 원칙</li> <li>(2)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확보원칙 및 협력원칙</li> <li>(5)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의 조화원칙</li> <li>(1) 종합성의 원칙</li> <li>(1) 행정의 민주적 및 종합적 처리의 원칙</li> <li>(2) 기초자치단체의 보편성(정권한성)의 원칙</li> <li>(7)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li> <li>(3) 불경합의 원칙</li> <li>(1) 자기책임성의 원칙</li> <li>(6) 자치성(책임성)</li> <li>(8) 능률의 원칙</li> <li>(1) 재정기술능력의 원칙</li> <li>(2) 행정비용 절감의 원칙</li> <li>(6) 경비부담능력의 원칙</li> <li>(1) 단일자치단체의 배분 및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li> <li>(1)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li> <li>(2) 자치단체 특별성(전문화)의 원칙</li> <li>(5) 보완성의 원칙</li> <li>(3) 행정수요의 특수성 적합의 원칙</li> <li>(4) 이해관계 범위의 원칙</li> <li>(2) 자치단체 평등성(불간섭)의 원칙</li> <li>(2)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li> <li>(2) 계층간 갈등제거의 원칙</li> <li>(10)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서비스의 주민밀착성 원칙</li> <li>(4) 현지성의 원칙</li> <li>(2) 법적합성의 원칙</li> <li>(2) 행정적 효과성의 원칙</li> <li>(2) 사회적 형평성</li> <li>(2) 행정간소화의 원칙</li> <li>(2) 지방행정 활성화 원칙</li> </ul> <p>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사무 독자처리의 원칙</li> <li>(1) 주민편의 우선의 원칙</li> <li>(3) 사무배분기준 존중의 원칙</li> <li>(3) 역이양 내지 차별이양의 원칙</li> <li>(3) 지방자치단체 의사존중의 원칙</li> <li>(3) 최소감독의 원칙</li> <li>(4) 총체적 이양의 원칙</li> </ul> <p>(동법과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점진적 이양의 원칙</li> <li>(2) 필요한 행정수단의 지원원칙</li> <li>(1) 정부수요 특수성의 원칙</li> <li>(2) 자치사무 귀속의 원칙</li> </ul>
---	---

## 나. 사무배분의 기준

- 지방자치법 제8조~제11조는 사무배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 예시주의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예시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57개로 분류하고 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일반행정사무)
  -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사회복지사무)
  - 셋째,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산업경제사무)
  - 넷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지역개발사무)
  - 다섯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교육문화사무)
  - 여섯째,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안전방위사무)
-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도에 배분되는 사무는 광역적 사무, 동일기준사무, 통일적 사무, 연락조정사무, 독자처리 부적당사무, 대규모시설 설치관리사무 등 6개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배분할 수 있음
-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시 서로 경합하지 않아야 하며, 경합되는 사무의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는 자치구가 아닌 특별·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배분의 특례에 해당하는 14가

지 사무의 예시를, 그리고 동시행령 제10조 [별표3]에는 인구50만 이상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사무배분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무)로 18가지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국가사무는 다음과 같음
  -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사무배분의 기준들은 다음의 표와 같음
  - 5명 이상의 학자들이 중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기준으로는 광역행정의 요구(8명), 국가의 존립 필요(7명), 사회정책적 요구(6명), 전국적 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8명),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5명), 정책상 전국적 규모로서 전국적·종합적으로 행하는 기획에 관한 사무(7명), 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경제성</li> <li>(2) 고도의 기술성·특수성·전문성</li> <li>(8) 광역행정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7)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li> <li>(2) 국민의 권리보호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4) 보완·대행기능</li> <li>(6) 사회정책적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4) 연락·조정 사무</li> <li>(2) 영향력의 범위(파급효과)</li> <li>(2) 자치단체의 기술·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li> <li>(2) 전국적 계획행정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8) 전국적 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li> <li>(5)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li> <li>(2) 전문성(기술 및 정보처리능력)</li> <li>(7) 정책상 전국적 규모로서 전국적·종합적으로 행하는 기획에 관한 사무</li> <li>(2) 조정행정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3) 주민편의성</li> <li>(2) 지방자치단체 기술로서 처리하기가 어려운사무</li> <li>(2) 지휘·감독 사무</li> <li>(2) 통일적 기준의 설정이나 처리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2) 통제행정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3) 지방자치법 제10조와 11조의 사무배분 기준</li> <li>(1) 가치재 공급의 재정책임·기술수준</li> <li>(1) 중복성</li> <li>(1)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li> <li>(1) 공공재의 순수성</li> <li>(1) 공익보지의 동등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1) 국가주권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권력행정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1) 규모의 경제</li> <li>(1) 기술사무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1) 기준통일성</li> <li>(1) 기초단체지원</li> <li>(1) 누출효과</li> <li>(1) 대규모 및 전문적 기술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1) 대외성</li> <li>(1) 민주성(현지성 또는 주민자치성)</li> <li>(1) 서비스 공급형태와 방식</li> <li>(1) 시·군·구 감독기능</li> <li>(1) 임시 응급적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li>(1) 전국적 공기업</li> <li>(1) 전국적 공익성</li> <li>(1) 전국적 배분성</li> <li>(1) 전국적 법제도하 및 전국적 지침</li> <li>(1) 전국적 복지성</li> <li>(1) 전국적 형평성 확보</li> <li>(1) 지역간 이해관계성</li> <li>(1) 지역개발성·지역경제성</li> <li>(1) 지역계획감독</li> <li>(1) 지역사회 근접성</li> <li>(1) 지역인접성·현지성</li> <li>(1) 지역전문성</li> <li>(1) 지역통일성</li> <li>(1) 지역형평성</li> <li>(1) 지역환경체계성</li> <li>(1) 편의성(대응성 또는 대민서비스 기능)</li> <li>(1) 편익지역의 공간성(영향의 범위)</li> <li>(1) 협력효과성·행정적통합성·평등성</li> <li>(1) 확인행정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li> </ul>
---	---

○ 이상에서 제시한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사무배분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의 조화원칙(5회)</li> <li>-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7회)</li> <li>- 자치성(책임성)의 원칙(6회)</li> <li>- 능률의 원칙(8회)</li> <li>- 경비부담능력의 원칙(6회)</li> <li>- 보완성의 원칙(5회)</li> <li>-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10회)</li> </ul>
사무배분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행정의 요구(8회)</li> <li>- 국가의 존립 필요(7회)</li> <li>- 사회정책적 요구(6회)</li> <li>- 전국적 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8회)</li> <li>-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5회)</li> <li>- 정책상 전국적 규모로서 전국적·종합적으로 행하는 기획 사무(7회)</li> </ul>

※ ( )안은 학자들이 중복하여 제시한 횟수

### 3. 중앙사무배분의 지방이양 실태

-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 이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4년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이 위촉되면서 지방이양추진체계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 이원화 됨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지방분권의 방향설정과 로드 맵에 제시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추진 담당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양대상사무의 발굴, 심의, 확정 등 이양사무 실무에 대한 사항을 담당
-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임기 중(1999년-2005년) 총 4,880건의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3,860건을 심의하였으며, 1,235건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확정함
  - 2006년 12월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양이 확정된 1,426개 사무중 1,087개 사무의 이양이 완료됨

기획사무(20.3%)			집행사무(79.7%)										합계 (건수)
권한 계획	승인 허가	지정	조치 처분	감독 명령	등록 신고	보고 제출	청문	교부	부과 징수	조사 검사	고지 공고	기타	
6	154	61	90	117	213	48	61	18	90	35	30	164	1,087

자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내부자료

- 이양된 사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환경, 건교, 해수, 농림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 사무가 많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기능 이양 추진
  - 기관위임사무 중심으로 이양 추진

## 4. 국가와 지방사무의 재배분방안

### 가. 사무재배분의 원론적 기준

- 외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사무배분의 4가지 원론적 기준 제시
  - 첫째는 정치적 책임성으로 이는 사무배분이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주민참여와 주민의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대응성(responsiveness)을 제고할 수 있음
  - 둘째는 경제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앙정부가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함. 따라서, 전국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사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사무는 중앙정부에게, 지역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야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는 공정성으로 사무의 배분이 지방자치단체간에 공정성 또는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의 경우에는 광역 차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무수행의 결과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시정해줄 수 있고,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넷째는 행정책임 명확화로, 성질이 같은 사무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총체적으로 배분되어야 하고 상호간에 중복적으로 사무가 배분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러나, 도시계획, 토지이용, 지역개발, 공해방지, 환경보전, 사회복지, 재해관리와 같은 기능의 경우 광역적 성격과 지방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광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처리가 요청되는 사무임. 이러한 사무는 계층간의 공동관리사무 또는 기능분담(shared responsibility)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기준이 확립되어야 함

## 나.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필요<sup>3)</sup>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헌법에 근거하여 규정됨
  -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는 헌법에서 국가사무, 주정부사무, 기초사무를 규정하면서 사무배분의 기본원칙들도 함께 규정됨
  -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무배분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사무배분법에서 분야별로 국가사무, 기초사무, 광역사무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있음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수행 또는 기능의 총괄이양을 통해서 사무의 자기완결성 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주로 전권한성의 원칙이 적용됨

###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결정 기본방식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시 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됨
  - 첫째, 먼저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ultra vires 원리) 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편적인 사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전권한성의 원칙) 반드

---

3)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2006

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에 맞는 기능분담을 시행. 이것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사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성 원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이 그 예임

- 둘째,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내지 전권한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외의 지방사무에 대한 보편적 수행권한을 자동적으로 가짐. 이것이 전권한성의 원칙에 의한 지방사무의 범위 결정 방식. 일본의 자치사무에 대한 범위 확대, 즉 법정수탁사무 이외의 자치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의 원칙 적용을 재확인 한 것 등이 그 예임.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열거한 목록 등에 의하여 사무수행의 권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무수행 권한의 열거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임. 프랑스의 사무배분법과 일본의 일괄이양법 등이 이러한 사례임

○ 따라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을 위한 사무배분 원칙이 적용되는 순서는 먼저 법률에 근거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진 후에 기초 및 광역정부에 대한 전권한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2) 보충성원칙에 근거한 사무배분

-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무수행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원칙으로, 이에 따르면, 사무배분상 최하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율적 결정권을 인정하고, 우선 순위를 부여해 주며, 이를 상위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음
- 보충성 원칙에 따르면, 자치권 실현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율적으로 권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능 수행의 범위가 커질 때 시민사회로부터 기초자치단체가(기초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국가에로 점차 보충적인 역할 담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따라서 이 원리는 시민과 공공행정기관의 공동생산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며, 결국 거버넌스(국가-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함

### 3) 전권한성 원칙에 근거한 사무배분

- 전권한성 원칙에 근거한 사무배분은 중앙정부 사무와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후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는 방식임
  -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종합행정 수행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또는 <행정권한의 보편성원칙>(clause générale de compétence générale)을 인정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이 가능하고, 자치단체의 사무수행 권한 범위도 함께 자율성이 확대된다. 즉, 국가위임 사무와 지역정부사무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그 사무의 범위가 규정되면, 나머지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전권한성의 원칙)에 의하여 보편적인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된 사무가 됨
  -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권한성의 원칙에 대하여 행정환경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내용이 변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주는 시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

### 4)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사무배분 기본원칙과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 권한(영역)은 무엇보다도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 속한 사무와 국가에 속한 사무를 구분하고자 하는 출발점은 사전 어떤 상황적 성격이나 사전에 주어진 본질적인 여건의 결과라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것이 규정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Chapus, 1996:263), 이러한 것은 한 국가의 입법권자에 의해서 먼저 결정됨
  -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사무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각 자치단체의 활동분야(action)를 인정 또는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함
  - 이 의미는 바로 사무배분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가능하면 헌법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입법권에 의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범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방사무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예시적 열거방식으로 지방사무의 중요한 일부를 지정한 것이라고 보이지만(지방자치법 제9조 2항), 법령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의 예외적 규정으로(동조2항 단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내용에 대한 전체목록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음

#### 가) 보충성원칙이 적용된 사무배분

-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보충성 원칙이 제시되지 않음
  -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헌법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분명한 지방자치의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게 되면, 바로 기초자치단체가 전권한성의 원칙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본적 명제인 주민 가까이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국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광역적 기능에 대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가 행·재정적 능력으로 사무수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국가가 사무를 대신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국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을 최소한으로 관여하도록 사무배분체계를 개선해야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미(지방분권특별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호)이므로 이 원칙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 나) 공동사무의 최소화

- 법률로써 국가와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을 규정할 때 각 사무처리의 주체를 독립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한 성격의 '공동사무' 제정방식을 피하도록 법령사전심사 절차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함
-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수행 시 계약방식에 의한 사무(공공정책) 수행체계를 빠른 시간내에 구축 필요

## 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관여

- 감독의 범위, 수단은 반드시 법률로 근거를 두어야 하고, 권한의 대리수행 방법 등도 법률에 따라야 함
- 대륙법계와 영미국법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입법적, 사법적으로 이루어짐
- 중앙부처에 의한 행정적 통제방식은 최소한의 감독수단으로 제한되며, 사전감독이 필요한 사항과 사후감독이 필요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개선방향과 일치되도록 해야 함

##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단계별 사무배분을 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정리한 뒤,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도 함께 고려<sup>4)</sup>

---

4) 김성호, 안영훈 외, 행정계층간 합리적 사무배분 기준개발과 지원체계 구축, 행정자치부, 1999년 연구보고서.

- 사무배분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 이념의 기본방향으로서 이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현지성, 자율적 책임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각국의 사무배분 원칙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상의 원칙 등과 함께 대상사무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단계를 3단계의 판단기준 고려

가) 제1단계 - 규범적 사무배분 판단기준

-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를 구체적으로 제시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대전제로서 전 국민에 관련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분류하고, 지역에 관련되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구성되는 특정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구분
- 기본적인 국가사무의 판단기준은
  - 첫째,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계되는 사무
  - 둘째, 전국적·통일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제 활동 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한 사무
  - 셋째, 전국적 규모와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시책 및 사업(내셔널 미니멈의 유지·달성, 전국적 규모·관점에서 요구되는 국가사회간접자본정비 등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한정한다) 수행 등의 사무
  - 넷째, 국가주권성, 전국적 발전 및 기획성, 전국적 법제도화 및 전국적 지침, 기준통일성, 대외성, 고도의 기술성·특수성, 전문성, 광역성, 국가경제성, 전국적 배분성, 전국적 공기업,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전국적 복지성, 전국적 공익성 사무

국가 통합성	세부기능	개념 및 기준
국가 존립성	국가존립 및 재정운영	국방, 외교, 병무, 남북교류, 조폐, 중앙선거, 국가재정·조직, 사법·행형, 국가경찰 등
전국적 통일성	국가적 계획	국토종합계획, 전국적 경제개발계획, 전국주요간선 도로계획 등
	국가적 이익이 담보된 전국규모사업	공항·항만·간척·철도 등 대규모 사업 등
	통일적 사무	도량형 기준설정, 의·약사 시험·면허, 통계조사, 측량, 근로기준설정 등
	국가적 환경사무	국유산림, 하천 등
	사회복지	전국적 실업대책, 사회보장, 생활보호 전국적 기준 설정
지방자치	국가적 지방자치정책, 전국적 지방재정기준운영, 시도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사무배분·기관설치 기준설정 적용	
고도 전문성	지식 및 기술분야	원자력, 국가적 차원의 지식정보화 사업 등

자료 : 법령사전심사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p. 51.

#### 나) 제2단계 - 사무특성상 판단기준

- 2단계 판단기준은 사무특성상 판단기준으로 이는 다음의 6가지에 기초하여 검토
  - 첫째, 편익지역의 공간적 제한
  - 둘째, 규모의 경제
  - 셋째, 서비스 공급의 통일화/다양화
  - 넷째, 공공재의 순수성
  - 다섯째, 누출효과(spillover)
  - 여섯째, 가치재의 항목들에 따라 판단

#### 다) 제3단계 - 실천적 기준

- 해당 자치단체의 기관역량에 근거한 사무수행 능력으로 판단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사무수행 역량이 판단근거가 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결정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능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인적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사무배분을 판단

## 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방안

###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 '08. 6. 30 현재 21개 부처 4,565개 기관
  - 공안행정기관(검찰청, 경찰청 등)과 현업행정기관(철도청, 우체국 등)이 대부분을 차지(기관수 86.25% 점유)

구 분	기관수	1차 기관	2, 3차 기관
<b>합 계</b>	<b>4,565</b>	<b>264</b>	<b>4,301</b>
노동행정기관	46	6	40
세무행정기관	182	53	129
공안행정기관	1,951	74	1,877
현업행정기관	1,986	8	1,978
기타행정기관	400	123	277

- '98 이후 점진적 감소추세
  - 전반적으로 '95년 민선자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98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에 다시 증가됨
  - 특히, 공안행정기관과 현업행정기관에서의 증가 폭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구 분	1987	1993	1995	1998	2003	2007	2008
<b>합 계</b>	<b>6,895</b>	<b>7,783</b>	<b>7,247</b>	<b>7,402</b>	<b>6,574</b>	<b>4,492</b>	<b>4,565</b>
노동행정기관	54	58	59	58	46	46	46
세무행정기관	170	198	202	204	175	181	182
공안행정기관	3,888	4,416	3,804	3,849	3,466	1,900	1,951
현업행정기관	2,185	2,507	2,575	2,693	2,495	1,974	1,986
기타행정기관	598	604	607	598	392	391	400

## 2)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본방향

- 새로 설치되는 국가광역행정청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광역행정청에 통합됨을 원칙으로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국가광역행정청으로 통합될 경우, 기존 사무와 기능에 대한 재배분을 실시함
  - 기존 기능 중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광역행정청으로 이관
  - 나머지 기능은 통합광역시로 이관함
- 국가지방광역행정청 이관 사무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초광역적 사무로 판단되는 대단위 지역계획업무, 광역교통업무, 도로·하천 등 광역적 인프라 건설 등은 국가지방광역행정청으로 이관
- 통합광역시 이관 사무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복지 및 편익에 관한 대부분의 기능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광역시로서의 지방적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기존에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도와 시군에 직접 위임했던 사무

### 3) 기능배분방안

(2008.6.30 현재)

유형별	부처별	기관명	이관 기준	국가광역행정청 이관기능
노동행정기관 (46)	노동부	지방노동청	전국적 통일성	△: 국가적 계획사무 통일적 사무:근로감독
		지방노동사무소		×
세무행정기관 (182)	국세청	지방국세청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국가 존립성	○
		세무서	국가 존립성	○
		지서	국가 존립성	○
	관세청	세관	국가 존립성	○
		세관감시소	국가 존립성	○
공안행정기관 (1,951)	법무부	지방교정청	국가 존립성	○
		교도소, 구치소, 지소	국가 존립성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국가 존립성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국가 존립성	○
		치료감호소	국가 존립성	○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국가 존립성	○
		보호관찰소	국가 존립성	○
		보호관찰소 지소	국가 존립성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 존립성	○
		외국인보호소	국가 존립성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국가 존립성	○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	전국적 통일성	○
		철도공안사무소 분소	전국적 통일성	○
	경찰청	고등검찰청	국가 존립성	○
		지방검찰청	국가 존립성	○
		지방검찰청 지청	국가 존립성	○
	경찰청	지방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
		경찰서	자치경찰제 도입	×
		파출소	자치경찰제 도입	×
		지구대	자치경찰제 도입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
		해양경찰서	자치경찰제 도입	×
		파출소	자치경찰제 도입	×

유형별	부처별	기관명	이관기준	국가광역행정청 이관가능	
현업행정 기관 (1,986)	지식 경제부	채신청	전국적 통일성	○	
		우체국(감독국)	전국적 통일성	○	
		우체국(소속국)	전국적 통일성	○	
		우편집중국	전국적 통일성	○	
기타행정 기관 (400)	공정거래 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국적 통일성	△ 공정거래기준	
		국가 보훈처	지방보훈청	전국적 통일성	△ 보훈정책의 수립과 집행
	국가 보훈처	보훈지청	전국적 통일성	×	
		지식 경제부	광산보안사무소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전국적 통일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 가족부	국립검역소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기본계획수립 검역기준 설정	
		국립검역소 지소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기본계획수립 검역기준 설정	
	환경부	유역환경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유역환경청 출장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환경청(대구, 원주, 전주)	지방자치, 지역특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환경청 출장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수도권대기환경청	지방자치, 지역특성	×	
	국토 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 사무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 사무소 출장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지방해양항만청	국가계획 대규모 사업	△항만계획 및 건설	
		지방해양항만청 건설사무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 중앙사무소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 표지종합사무소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홍수통제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항공청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항공청 항공지방사무소 (김포, 제주)		지방자치, 지역특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항공청 지방공항출장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유형별	부처별	기관명	이관기준	국가광역행정청 이관기능
기타행정 기관 (400)	조달청	지방조달청	전국적 통일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통계청 Office	지방통계청	전국적 통일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통계청 출장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지방통계사무소 (인천, 충북, 전북, 제주)	지방자치, 지역특성	×
		지방통계사무소 출장소	지방자치, 지역특성	×
	병무청	지방병무청	전국적 통일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전국적 통일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지방병무지청	전국적 통일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전국적 통일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국유림관리소	전국적 통일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중소 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전국적 통일성	△ 국가인증시험검사 하도급거래기준
	식품 의약품 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기상청	지방기상청	전국적 통일성 고도 전문성	○
		기상대	고도 전문성	○
		기상관측소	고도 전문성	○
		기상대 기상관측소	고도 전문성	○
		기상레이더관측소	고도 전문성	○
		항공기상청	고도 전문성	○
		항공기상청 기상대	고도 전문성	○
		항공기상청 기상통신소	고도 전문성	○
항공기상청 공항기상실		고도 전문성	○	

※ 참고 ○ : 전체 기능을 국가광역행정청으로 이관

△ : 제시한 일부기능만 국가광역행정청으로 이관(나머지는 통합광역시로 이관)

× : 전체 기능을 통합광역시로 이관

### Ⅲ.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방안

#### 1. 자치1계층안

##### 가. 개요

##### 1) 대도시 자치1층제안

###### ○ 자치계층

-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를 통하여 현행 자치2계층제에서 자치1계층제로 전환

###### ○ 행정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가 통합을 통하여 평균 인구를 70만명(50만 이상 시 규모) 정도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70개 내외가 됨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는 현행 50만 이상 시 규모급이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 광역시 기능 수행

###### ○ 논의사례

- 광역자치단체 폐지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합확대는 이종수(1996), 국회특위(2006), 신한국당(1996), 박증주외(1998), 민주당(2008), 허태열(2008) 등의 안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치1계층화를 주장하는 경우 국가사무의 광역적 수행관리를 위하여 허태열(2008)의 안은 광역단위의 국가행정기구 설치를, 그리고 김병국2안(2006)은 도의 국가행정기관화를 제안하고 있음

###### ○ 특징

- 인구 50~70만
- 지방자치단체의 수 60~70개
- 현행 시·도가 수행하는 기능 담당

## 2) 광역도시 자치1층제안

### ○ 자치계층

-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를 통하여 현행 자치2계층제에서 자치1계층제로 전환

### ○ 행정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가 통합을 통하여 평균인구를 100만~200만명(광역시 규모급) 정도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30~50개 미만 정도가 될 것임

## 나. 사무재배분의 원칙과 기준

- 도가 폐지되면, 도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인 국가광역행정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
  - 국가광역행정청은 기존 도의 사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은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은 사무를 담당함
  - 기초자치단체는 신설되는 국가광역행정청에서 담당하지 않는 기존 도의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담당함
-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사무를 부여할 경우는 특별성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
-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판단기준으로는 지역인접성, 현지성, 주민밀착성, 주민중심성, 지역개발성, 지역경제성, 지역사회 근접성,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규정 등 8가지를 들 수 있음

구 분	세부기능	사 례
현 지 성	지역인접성	지역사회 조직 취업정보센터 운영, 보육시설 지원, 경로식당 운영 지급 등
	현지성	교육·문화·체육·예술 진흥 유아원 ~ 고등학교 설치,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지방문화재단 리, 지방문화예술 육성 등
	주민밀착성	주민생활 복지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부녀보호, 생활보호자지원, 보건진료기관, 전염병 예방·방역, 묘지·화장, 위생, 청소·오물 등

대 응 성	주민중심성	생활환경 시설	주거환경개선, 자연보호, 하천관리, 상·하수도·간이급수시설, 공원·녹지, 교통편의시설, 재해대책 등
	지역개발성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지방토목·건설사업, 도시계획, 지방도로 등
	지역경제성	산업진흥	산업용수 시설,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복합영농 지도·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특화)산업 개발·육성, 소비자보호, 공유림 관리 등
	지역사회 근접성	지역민방 위·소방	지역·직장 민방위, 화재예방·소방 등
	지방자치법 규정	기관운영의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

- 국가광역행정청(가칭)의 사무 판단기준은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의 경우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기준안을 적용
-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사무의 판단기준으로는 조정역할, 지역계획감독, 광역서비스, 기초단체지원, 지역형평성, 지역간 이해관계성, 협력효과성, 행정적 통합성, 평등성, 지역환경체계성, 지역통일성, 지역전문성 등 12가지

## 다. 사무재배분 방안(사례)

### 1) 처리주체별 사무분류표

국가(Ⅰ)	시도(Ⅱ)	시군구(Ⅲ)	민간(Ⅳ)
10 중앙부처사무 11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12 소속기관사무 13 산하기관사무 41 국가/시도 공동사무 42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 43 국가/시군구 공동사무	20 자치사무 21 국가위임사무 41 국가/시도 공동사무 44 시도/시군구 공동사무	30 자치사무 31 국가직접위임사무 32 시도위임→시군구 재위임사무 33 시도자치사무→시군구 위임사무 42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 43 국가/시군구 공동사무 44 시도/시군구 공동사무	50 국가 51 시도 52 시군구

## 2) 특별시·광역시의 사무재배분방안

- 부산광역시는 현재 6,986개의 단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사무를 광역사무와 자치사무로 재배분하면 자치사무 6,970개, 광역사무 196개로 구분됨
- 단위사무 배분에 있어 1개의 사무에 다수의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사무배분의 원칙에서는 자율성 2,636개, 책임성 6,219개, 능률성 306개, 보완성 1,593개, 재정능력 278개, 기초우선 197개였고, 기준에서는 국가존립성 53개, 통일성 160개, 전국성 120개, 고도의 기술성 100개였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의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 14항목을 기초자치단체 사무와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사무로 분류
- 현행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 중 매장 및 묘지 사무, 청소·오물 사무, 도시계획 사무,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무, 상수도사업 사무, 공공하수도 사무, 관광·휴양시설 설치·관리 사무,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시 설치·관리 사무(8개 항목, 25개 사무)는 모두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조정
  - 인사 및 교육 사무(기초자치단체 내부 인사 교류), 지방재정사무(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지방토목·주택건설 사무(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국민주택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중교통행정 사무( 시내버스·시의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 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 육성 사무(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등 5개 항목, 11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조정
- 지방제도사업 사무(3개 사무)는 모두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사무로 조정
  - 인사 및 교육 사무(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지방재정사무(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지방토목·주택건설 사무(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중교통행정 사무(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이용에 관한 행정), 지역경제 육성 사무(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등 5개 항목, 7개 사무는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사무로 조정

현행 특별사·광역시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인사 및 교육 사무	·기초자치단체 내부 인사 교류(6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지방재정 사무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매장 및 묘지 사무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	-
청소·오물 사무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
지방도묵·주택건설 사무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도시계획 사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지역의 입안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무	·중로(12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노복과 노선의 중요도 고려)의 유지·관리	-
상수도사업 사무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상수도 공채 발행	-
공공하수도 사무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
관광·휴양시설 설치·관리 사무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현행 특별사·광역시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지방계도사업 사무	-	·지방계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지방계도사업의 설치·운영 ·지방계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대중교통행정 사무	·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 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지역경제 육성 사무	·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설치·관리 사무	·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3) 도(道) 사무재배분

- 충청남도에는 현재 2,634개의 단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사무를 광역사무와 자치사무로 재배분하면 자치사무 2,566개, 광역사무 68개로 구분됨
- 단위사무 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사무배분의 원칙에서는 자율성 2,138개, 책임성 2,404개, 능률성 60개, 보완성 715개, 재정능력 87개, 기초우선 53개였고, 기준에서는 국가존립성 18개, 통일성 60개, 전국성 41개, 고도의 기술성 26개였음
- 도(道)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행 사무는 6개 대분류 사무, 47개 중분류 사무로 구분됨
  -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3] 에서 규정한 도의 사무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18개 사무 항목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적용
- 대분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로 구성

- 대분류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로 조정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등 12개 중분류 사무로 구성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중분류 사무의 구성 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와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구분하면 다음의 사무의 수로 나뉨<sup>5)</sup>
  -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는 이전주민복지에 관한 사업(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2),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4),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26), 국민건강증진사업(5),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3),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1),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6),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1),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6),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6),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1)에서 64개 사무로 구성
  -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는 이전주민복지에 관한 사업(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2),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3),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7), 국민건강증진사업(0),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2),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5),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0),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0),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1),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1),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

5) 상세한 사무 내역은 아래의 표 참조.

사무(0)에서 22개 사무로 구성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조정,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부녀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등 8개 사무는 수립 및 실행을 지방자치단체 이전 사무로, 지원 및 조정을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나눔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대분류	중분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 보조금 지급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영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아동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장애인의 고용 촉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부녀복지 종합계획 수립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부녀단체 육성·지원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 교육·지원	·노인복지사업계획 조정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조정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 계획 조정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조정 ·부녀복지 종합계획 조정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조정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대분류	중분류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국민건강증진사업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계획 수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보건교육 지도·감독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공중보건사의 배치·지도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전염병 예방·방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전염병 예방·방역에 따른 비용 지원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 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 허가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분묘의 일제신고 ·시체운반업 허가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율을 결정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율을 결정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는 늪지·보(洑)등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공유림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 민예품 개발 등 13개 중분류 사무로 구성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의 중분류 사무의 구성 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와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구분하면 다음의 사무의 수로 나뉨<sup>6)</sup>
  -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는 늪지·보(洑)등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3), 농업자재의 관리(1), 복합영농의 운영·지도(2),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4), 공유림관리(2),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4), 가축전염병 예방(1), 지역산업의 육성·지원(7),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6), 중소기업의 육성(7),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2),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 민예품 개발(4)에서 45개 사무로 구성
  -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는 늪지·보(洑)등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4),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9), 농업자재의 관리(2), 복합영농의 운영·지도(1),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0), 공유림관리(4),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4), 가축전염병 예방(4), 지역산업의 육성·지원(0),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2), 중소기업의 육성(0),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3),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 민예품 개발(0)에서 33개 사무로 구성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농작물 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사업계획 수립·조정,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조정,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등 6개 사무는 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 이전 사무로, 계획 조정을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나눔

---

6) 상세한 사무 내역은 아래의 표 참조.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대분류	중분류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농지·보(狀)등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조정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지원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 의 조정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조정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농업자재의 관리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 단지 조성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촉진·연구개발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추진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농어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계획 수립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
	공유림관리	·지역산림계획 작성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전연림 보육사업 지도 ·특수조림지 관리사업소 운영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 사업계획 수립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 계획 등 수립 ·종축장 운영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 사업계획 조정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 계획 등 조정 ·보호종축의 지정 ·가축 개량·증식·보호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투약조치 등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 한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한 시설 설비 명령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추진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대분류	중분류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소비자보호정책 수립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소비자 계몽과 교육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 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
	지역특화산업 의 개발과 육성·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조정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 민예품 개발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작성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조정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지방토목·건설 사업의 시행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설치·운영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조정
	도시계획사업 의 시행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대분류	중분류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도로관리계획 수립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도로통행료의 징수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달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조정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지도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조정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조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조정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조정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조정·지도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자연보호 활동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자연보호계획 수립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도 ·자연보호 대상을 지정·관리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하천예정지의 지정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하천감시(사리채취단속 등)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대분류	중분류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상수도공채 발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조정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 ·관광휴양지의 관리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 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지방계도사업의 경영	-	·지방계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지방계도사업의 설치·운영 ·지방계도사업의 경영 평가 ·지방계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지방계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지도 및 지원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재해구호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 배치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도매센터 개설허가 ·연쇄화 사업자 지정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 정보의 제공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역개발사업,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자연보호 활동,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 15개 중분류 사무로 구성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의 중분류 사무의 구성 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와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구분하면 다음의 사무의 수로 나뉜다
-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는 지역개발사업(3),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7), 도시계획사업의 시행(8),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9),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7),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5), 자연보호 활동(10),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7),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11),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1),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5), 지방궤도사업의 경영(0),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3),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5),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14)에서 95개 사무로 구성
-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는 지역개발사업(5),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0),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0),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7),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4), 자연보호 활동(3),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2),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0),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2),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5), 지방궤도사업의 경영(7),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0),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1),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3)에서 40개 사무로 구성

---

7) 상세한 사무 내역은 위의 표 참조.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수립·조정,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지도,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지도,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조정 등 11개 사무는 계획 수립 및 육성을 지방자치단체 이전 사무로, 계획 조정 및 지도를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나눔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대분류	중분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시민회관의 운영·관리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 부더의 사용료 징수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허가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등 5개 중분류 사무로 구성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중분류 사무의 구성 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와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구분하면 다음의 사무의 수로 나뉨<sup>8)</sup>
  -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3),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6),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7),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2)에서 22개 사무로 구성
  -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0),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0),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0),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1)에서 2개 사무로 구성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로 조정이 가능

---

8) 상세한 사무 내역은 위의 표 참조.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
대분류	중분류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민방위대 조직관리 ·민방위경보 발령	·민방위대 지도
	화재예방 및 소방	·소방기본계획 수립 ·소방관서의 설치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소방응원규약 제정 ·화재 예방 활동 ·소방홍보 및 계몽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소방관서의 지휘·감독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휘·감독·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화재예방 및 소방 등 2개 중분류 사무로 구성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의 중분류 사무의 구성 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와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구분하면 다음의 사무의 수로 나뉨<sup>9)</sup>
  - 기초자치단체 이전 사무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4), 화재예방 및 소방(13)에서 17개 사무로 구성
  -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1), 화재예방 및 소방(5)에서 6개 사무로 구성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에서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화재진압 및 구급 업무의 지휘·감독,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등 5개 사무는 조직관리, 설치,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 이전 사무로, 지도 및 지휘, 감독 사무를 국가광역행정청(가칭) 이전 사무로 나눔

9) 상세한 사무 내역은 위의 표 참조.

## 2. 자치2층제안

### 가. 일반론

- 자치2층제안의 가능 유형
  - 자치2층제안의 유형을 나눌 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개편측면에서 접근가능함
  -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50만 미만(도시2층제안), 50만-100만(대도시2층제안), 100만 이상(광역도시2층제안)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수를 조정할 경우 도시2층제안, 대도시2층제안, 광역도시2층제안과 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각 정당의 자치2층제안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치2층제안에도 다양한 유형이 도출될 수 있음
  - 여기서는 각 정당이 법안으로 제출한 개편안 중에서 자치2층제안(권경석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사무재배분 방안을 제시함

※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비교표

내 용		권경석(한나라당)	우윤근(민주당)	이명수(선진당)
목적·배경		국가경쟁력,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지방행정체제 효율성 제고	세계화·사이버 시대 부합하는 행정체제 구축, 국가경쟁력,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 균형발전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강화
개편내용 (=案)	서울	25개 자치구→통합자치구(4-5개)	25개 자치구→행정구(5개)	
	광역	·기본 : 도 존치 ·예외 : 도내 시군 2/3통합 시→도 폐지 ·광역행정기관 설치 : 국가위임사무+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수행	·기본 : 광역시 ·도 폐지(사무는 통합시로 이관) ·국가광역행정기관 설치 : 국가위임사무+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수행	·특별시, 시·도의 통합을 통한 광역화 ·1개 강소국 인구 : 500만 - 1,000만 ·중앙정부 : 외교·국방·통화 등 국가존립사무만 담당 ·통합된 특별시, 시·도 : 교육, 문화, 경찰, 환경, 지역경제, 산업 등 처리
	기초	·도내 시군 통합→100만 이상: 광역시(100만 이하: 통합시) ·전국 통합시 40 - 50개 규모 ·읍면동 : 주민자치기구화	·도내 시군 통합→통합시 (통합시 내 행정군, 구, 출장소 설치) ·전국 통합시 70 여개 ·읍면동 : 주민자치기구화(조례)	·생활권·경제권 고려한 행정구역의 조정 ·120 - 200개로 개편
추진주체	·통합추진위원회(시군구: 15-20인) ; 통합추진 공동위원회(전국: 20-30명)	·추진위원회(9인: 대통령 임명, 4인 국회의원, 사무국,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설치) ·1년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의무	·대통령 소속 "시·도통합위원회(광역 통합 담당) ·지역 시·도 통합위원회(해당 지역) ·기초통합 : 행정구역조정공동위원회; 행정구역조정위원회(주민, 단체장, 지압의회의 청구)	
추진방법	주민투표	주민투표	주민투표	
시행시기	법을 공포 후 6개월	법을 공포 후 1개월		
소요자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특징	·자치2층제 ·조건부 도 폐지 ·광역행정기관 ·주민투표 강조	·자치1층제 ·도 폐지, 국가광역행정기관 설치	·자치2층제 ·연방제 모형(6개 내외의 강소국에 입법·사법·행정권 부여)	

## 나. 원칙과 기준

### ○ 정치조직원리

- 중앙집권제
- 연방제

※ 정치조직원리를 기준으로 본 행정체제 개편안

구 분	개편유형		
	중앙집권제	중앙집권제	연방제 도입
시·도 체제	유지	폐지	6-7개 권역으로 개편
시·군·구 체제	50-60개	70-80개	120-200개
제안자(정당)	권경석(한나라당)	허태열(한나라당), 우윤근(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특 징	시 통합+도 존속	시 통합+도 폐지	광역 도 연방

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3/)

### ○ 분권화의 정도

- 지방분권
- 집권화

※ 지방분권과 집권화에 따른 정부형태

중앙집권적 단일국가	지방분권적 단일국가		
예) 북한, 쿠바	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중앙집권적 연방국가	협력적 연방국가	지방분권적 연방국가
	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예) 독일, 오스트리아	예) 벨기에, 스위스, 미국

← 집권화

분권화 →

자료: 이기우, '강소국연방제'의 도입방안(2009.6.3), 20면 참조.

## 다. 사무재배분 방안

-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개편안
  - 기초자치단체가 통폐합함으로써 인구의 수가 50만이하(도시2층제안), 50만-100만(대도시2층제안), 100만 이상(광역시2층제안)으로 변화되는 자치2층제 개편안은 모두 여기에 해당
- 지방분권적 혹은 연방제적 행정체제 개편안
  - 광역은 지방자치, 지방문화, 지방교육, 지방경제, 지방산업, 지방경찰 침질서안전, 지방공간계획, 보건, 지방세 등의 사무영역을 처리(이기우: 2009, 30면 참조)
  - 기초는 보충성의 원리, 전권능성 및 자기책임성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안녕과 관련된 지역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이때, 처리하게 되는 자치사무는 법률유보 원리와 법률우위 원리의 지배를 받으며(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광역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은 처리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24조 참조)
-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재배분 방안
  -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 자치1계층제 적용 시, 국가광역행정청(가칭)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 예시된 부분에 해당됨
-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재배분 방안
  -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에 따라서 50만 도시, 70만 도시, 100만 도시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로 차등 배분함
  - 50만 도시 : 자치1계층제 실시의 경우, 예시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함
  - 70만 도시 : 자치1계층제 실시의 경우, 예시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광역행정청 사무의 일부를 수행함(기존 2계층제의 50만 이상 시와 유사한 사무 수행)
  - 100만 도시 : 자치1계층제 실시의 경우, 예시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광역행정청 사무 전체를 수행함(기존 광역시와 유사한 사무 수행)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인 구		
대분류	중분류			50만	70만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 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 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지원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지역단위 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지도·감독 및 지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시설의 운영 지도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아동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장애인의 고용 촉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의 말 행사 추진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물우청소년 보호 지원 ·부녀복지 종합계획 수립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부녀단체 육성·지원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 지원	·노인복지사업계획 조정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조정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 계획 조정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조정 ·부녀복지 종합계획 조정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조정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국민건강 증진사업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보건교육 지도·감독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보건진료 기관의 설치·운영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보건진료소설치·운영비의 지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공중보건소의배치·지도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의료원의 설치운영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인 구		
대분류	중분류			50만	70만	100만 이상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전염병 예방·방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전염병 예방·방역에 따른 비용 지원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 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전염병 예방시설설치 ·전염병 예방·방역에 따른 비용 지원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묘자·화장장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 허가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 취소 ·분묘의 일제신고 ·시체운반업 허가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에 관한 지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지방공단 등의 설립·운영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조언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인 구		
대분류	중분류			50만	70만	100만 이상
농림산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농지·보 (浚)등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조정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지원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 조금 지원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지원	기초자치 단체 사무 + 광역자치 단체 사무
	농림·축· 수산물 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 의 지원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 업 지원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 성 계획의 조정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조정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 구 지도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 리 지도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조정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조정	기초자치 단체 사무 + 광역자치 단체 사무
	농업자재 의 관리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 단지 조성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 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 진·연구개발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기초자치 단체 사무 + 광역자치 단체 사무
	복합영농 의 운영·지도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 부 추진 계획 수립·추진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통합시 단위복합영농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추진	기초자치 단체 사무 + 광역자치 단체 사무
	농의 소득사업 의 육성·지도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 획수립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농어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계획 수립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공유림 관리	·지역산림계획 작성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 추진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특수조림지 관리사업소 운영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기초자치 단체 사무 + 광역자치 단체 사무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 사업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 사업계획 수립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 계획 등 수립 ·중축장 운영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 농 진흥 사업계획 조정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 배 사업 계획 등 조정 ·보호종축의 지정 ·가족 개량·증식·보호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기초자치단 체 사무 + 광역자치단 체 사무
	가족 전염병 예방	·가족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 감독	·가족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특약조치 등 ·전염병 발생 가족의 격 리·이동제한 등 ·가족전염병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 령 ·가족위생시험소 운영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기초자치 단체 사무 + 광역자치 단체 사무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인 구		
대분류	중분류			50만	70만	100만 이상
농림수산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추진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 유치 지원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소비자보호정책 수립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소비자 계몽과 교육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정·감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중소기업의 육성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조정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조정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우수도산품 개발과 관광 민예품 개발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 작성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우수도산품 개발·보급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조정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도시새마을운동 지도 ·국토공원화사업 지원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도시새마을운동 지도 ·국토공원화사업 지원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지방도·국·군·시·읍·면·동 건설사업의 시행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조정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통합광역시 건설종합계획수립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계획도로의 유자관리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인 구		
대분류	중분류			50만	70만	100만 이상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도로관리계획 수립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 인정과 폐지·변경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도로통행료의 징수 ·점도구역의 지정·관리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료원 관리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행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조정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지도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조정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조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조정 ·지역별 대기보전관리 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조정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지도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조정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조정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조정·지도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 ·농어촌주택표준 설계 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조정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자연보호 활동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 지역 관리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자연보호계획 수립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도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하천예정지의 지정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하천감시(사리채취단속 등)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인 구		
대분류	중분류			50만	70만	100만 이상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상수도공채 발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계획 수립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조정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등 녹지·휴양·관광·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계획 수립·집행 ·관광휴양지의 관리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 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지방계도 사업의 경영	-	·지방계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지방계도사업의 설치·운영 ·지방계도사업의 경영 평가 ·지방계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지방계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			광역자치단체 사무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지도 및 지원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	기초자치단체 사무	좌동	좌동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재해구호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응급조치 대행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인 구		
대분류	중분류			50만	70만	100만 이상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 배치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도매센터 개설허가 ·연쇄화 사업자 지정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 정보의 제공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	기초자치단체 사무	최종	최종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시민회관의 운영·관리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 자로부터의 사용자 징수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	기초자치단체 사무	최종	최종
교육·체육·문화예술인인 사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사·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사·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사·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반출 허가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현행 도 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인 구		
대분류	중분류			50만	70만	100만 이상
교육체육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 술타령의 권장 및 보호 육성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 치 운영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 원·육성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 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 성 및 운용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 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	기초자치단체 사무	최등	최등
	지방문화 예술단체 의 육성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지방문화사업자에 대 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역 및 직장민방 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사·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사·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민방위대 조직관리 ·민방위경보 발령	·민방위대 지도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화재예방 및 소방	·소방기본계획 수립 ·소방관서의 설치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 관리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소방응원규약 제정 ·화재 예방 활동 ·소방홍보 및 계몽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 허가	·소방관서의 지휘·감독 ·화재진압 및 구급업 무 지휘·감독·소방시 설의 설치 및 유지관 리의 지도·감독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 무의 지도·감독 ·소방 관계 단체의 지 도·감독	기초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 + ·소방관서의 지휘·감독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휘·감독·소 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기초자치단체 사무 + 광역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첨가된 사무는 밑줄로 표시

u003cbru003e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주민서비스 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점검평가, 홍보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5)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3)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4) 사회복지법인 설립,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3)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4)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5) 어려운 이웃돕기 및 행사지원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애보호비 지급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 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li> <li>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li> <li>3)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4)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5)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li> <li>6)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li> <li>7)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도 단위)</li> <li>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li> <li>9) 부녀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10)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li> <li>11) <u>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추진</u></li> <li>12) <u>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u></li> <li>13) <u>노인단체의 육성지원·지도에 관한 사항</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li> <li>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li> <li>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li> <li>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li> <li>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li> <li>8) 아동보호조치</li> <li>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li> <li>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li> <li>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li> <li>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li> <li>13) 장애인의 파악·관리</li> <li>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li> <li>15) 장애인의 고용 촉진</li> <li>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li> <li>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li> <li>18)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li> <li>19)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li> <li>20) 불우청소년보호</li> <li>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li> <li>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li> <li>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li> <li>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li> <li>25) 부녀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li> <li>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li> <li>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li> <li>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li> <li>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li> <li>30) 부녀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li> <li>31) 부녀단체 육성·지원</li> <li>32)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지원</li> <li>33) <u>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u></li> </ol>
마. 국민건강증진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li> <li>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li> <li>3) 보건교육 지도·감독</li> <li>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li> <li>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li> <li>6) <u>저소득층 주민 보건의료사업</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li> <li>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li> <li>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li> <li>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li> <li>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li> <li>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li> <li>7) <u>건강증진센터업무에 관한 사항</u></li> </ol>
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li> <li>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li> <li>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li> <li>4) 공중보건역사의 배치·지도</li> <li>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li> <li>6)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li> <li>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li> <li>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li> </ol>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li> <li>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li> <li>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li> <li>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li> <li>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li> <li>3)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지정 및 운영</li> <li>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li> <li>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li> </ol>
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li> <li>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li> <li>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li> <li>5) 분묘의 일제신고</li> <li>6) 시체운반업 허가</li> </ol>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li> <li>2) 공중위생업소 관리</li> <li>3)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li> <li>4)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li> <li>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li> <li>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li> <li>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li> <li>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li> <li>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li> <li>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li> <li>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li> <li>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li> <li>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li> <li>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li> <li>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li> <li>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li> </ol>
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li> <li>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li> <li>4)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li> <li>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li> <li>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li> <li>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li> <li>5)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li> <li>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li> <li>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li> <li>8)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li> <li>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li> <li>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li> <li>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li> <li>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li> <li>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li> <li>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li> <li>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li> <li>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 관리</li> <li>17) 자원재활용 업무</li> </ol>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1)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2) 지방공기업 설립 및 지도·감독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6)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늪지·보(汜)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조정 2)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3)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지원 4)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5) 농업용 지표수,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농업, 생활용수 수질관리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조정 5)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6)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7)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8)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9)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0)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 시범사업 용자금 관리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수립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3)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4)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5)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5)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6)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7) 축산물 등급제 지도 8)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9)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10) 축산물 가공·보관·운반·판매에 관한 업무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5) 중소형 농기계지원  1)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2)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3)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수립 지도 4)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바. 공유림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li> <li>2)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li> <li>3) 특수조림지 관리</li> <li>4)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산림계획 작성</li> <li>2)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li> <li>3) 산불예방, 도·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li> <li>4) 산림병충해 방제</li> <li>5)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li> <li>6) 임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li> <li>7)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li> <li>8) 입산허가</li> <li>9)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li> <li>10)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반입 통제</li> <li>11) 산림재해복구</li> </ol>
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조정</li> <li>2)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조정</li> <li>3) 보호종축의 지정</li> <li>4) 가축 개량·증식·보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li> <li>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li> <li>3)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수립·추진</li> <li>4) 종축장 운영</li> <li>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li> <li>6) 우량종축의 보급</li> <li>7) 종축검사</li> </ol>
아. 가축전염병 예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전염병관리대책</li> <li>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li> <li>3)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li> <li>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li> <li>5) 가축위생시험소 운영</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li> <li>2)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보고</li> <li>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li> <li>4)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li> <li>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li> </ol>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역산업발전로드맵 추진에 관한 사항</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li> <li>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li> <li>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li> <li>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li> <li>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li> <li>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li> </ol>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li> <li>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li> <li>3)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li> <li>4)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li> <li>2) 물가지도 단속</li> <li>3) 소비자 계몽과 교육</li> <li>4) <u>소비자 피해신고 및 방문판매에 관한 업무</u></li> </ol>
카. 중소기업의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소기업 육성 종합 기획·조정</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li> <li>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li> <li>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li> <li>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li> <li>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li> <li>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li> <li>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li> </ol>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파.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작성 2)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총괄 3) 지역공예산업 육성 지원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2)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 개발계획 수립·시행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4)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 5)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6) 지역특산품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1)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2)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3)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4) 토산품 전시관 운영 5)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6)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4)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5)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6)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조정  1) 광역도시계획수립·추진 2) 도시기본계획 승인 3) 도시계획시설 결정 4) 단위용도 지역·지구 결정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3)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4)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5)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6)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1)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2)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7)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라.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관리계획 수립</li> <li>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li> <li>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li> <li>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군도로관리계획 수립·시행</li> <li>2) 시·군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li> <li>3)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 선</li> <li>4) 시·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li> <li>5) 도로통행료의 징수</li> <li>6) 점도구역의 지정·관리</li> <li>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li> <li>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li> <li>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li> </ol>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조정</li> <li>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지도</li> <li>3)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li> <li>4)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조정</li> <li>5)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li> <li>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li> <li>7)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 시설별 배출량 조사</li> <li>8)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시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li> <li>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li> <li>3) 위생변소 개량사업 수립·시행</li> <li>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li> <li>5) 생활개선사업 추진</li> <li>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li> <li>7) 광고물 정비·단속</li> <li>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li> <li>9) 광고물 시범개선사업</li> <li>10)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li> <li>11)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li> </ol>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조정</li> <li>2)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조정·지도</li> <li>3)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li> <li>4)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li> <li>2) 취락구조 개선사업 수립·추진</li> <li>3)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li> <li>4)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li> </ol>
사. 자연보호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도</li> <li>2) 자연보호 대상을 지정·관리</li> <li>3) 자연학습원 조성·관리</li> <li>4)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li> <li>5)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환경보전 계획 수립·시행</li> <li>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li> <li>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 계획 수립·시행</li> <li>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li> <li>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li> <li>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li> <li>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li> <li>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li> <li>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li> </ol>
아. 지방하천·준용 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li> <li>2)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li> <li>3)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li> <li>4) 하천제방정비 및 유지관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li> <li>2) 하천예정지의 지정</li> <li>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li> <li>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li> <li>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li> <li>8) 하천감시(사리채취단속 등)</li> </ol>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상수도·하수도 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차.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조정 2)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 2) 간이상수도사업장 선정 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 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
가.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정용료 징수 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정용료의 징수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8)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정용료의 징수 9)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행 10) 관광휴양지의 관리 11)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
타. 지방계도사업의 경영	1) 지방계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계도사업의 설치·운영 3) 지방계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계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5) 지방계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1) 시·군·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군·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수립·운영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li> <li>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li> <li>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li> <li>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li> <li>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li> <li>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li> <li>7)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li> <li>8)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li> <li>9) 도매센터 개설허가</li> <li>10) 연쇄화 사업자 지정</li> <li>11)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시행</li> <li>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li> <li>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li> <li>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li> <li>5) 농공지구의 지정·공고</li> <li>6)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li> <li>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그 사업계획 승인</li> <li>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 정보의 제공</li> <li>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li> <li>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li> <li>11)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li> <li>12)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li> <li>13)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li> <li>14)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li> <li>15)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li> <li>16) 시장 개설허가</li> <li>17) 시장관리자 지정</li> </ol>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li> <li>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li> <li>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li> </ol>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li> <li>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li> <li>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li> <li>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li> <li>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li> <li>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li> <li>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li> <li>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li> <li>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li> <li>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li> </ol>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1)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 5)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6)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7) <u>문화재단 설립추진</u>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2)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7) <u>우수문화예술축제 지원</u>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1)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u>민방위 홍보에 관한 사항</u>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민방위대 교육훈련
나. 화재예방 및 소방	1) 소방관서의 지휘·감독 2)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휘·감독 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지도·감독 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 <참고문헌>

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87, 지방자치제 실시 연구자료집.

김보현·김용래, 1967,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부산광역시, 1996, 법령상 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연구-  
최종보고서.

이기우, 2009.6.3, '강소국연방제'의 도입방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내부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2002, 법령상 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지  
방이양대상사무발굴연구-최종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법령사전심사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1999, '99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지침.

홍정선, 2007, 지방자치법학, 서울: 법영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3/)